

간호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내

- **수급자격 인정 요건**(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, 「고용보험시행규칙」 별표2 제7호)
- ①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·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,
 - ②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됨 (단, ③ 간호의 필요성이 해소된 이후에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함)

□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 준비 서류

- ① **간호 대상자에 대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**(최소한 30일 이상 간병기간 필요)
 - 진단서에 기재 내용: 환자의 인적사항, 병명, 진료내역,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
 - 간호 대상자의 질병·부상 등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(보호자의 도움이 없는 일상생활이 불가능을 입증)
- ② **본인(신청인)이 간호를 해야 함을 입증할 자료**
 - 간호 대상자 명의(이름)의 가족관계증명서
 - 동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
 -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
- ③ **다른 부양 의무자가 간호를 할 수 없다는 자료**
 - 일을 하고 있는 경우: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
 - 원거리 거주: 주민등록등본
 - 기타 장애인등록증, 재학증명서 등
- ④ **이직 회사의 사업주가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**
 -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확인(이직회피노력 확인)
- ⑤ **간호해야할 사유가 해소가 되었음을 입증할 자료**
 -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, 호전되어 간병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
 - 요양원 등에 기관 입소확인서, 간병인 고용확인서 등 간호 해소 증빙 자료

□ 주의 사항

간호로 인한 문제의 해결이 즉, 간호의 필요성(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)이 해소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,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(120일~270일) 전부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일 후 1년 이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.

※문의: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(팩스 0508-8230-0153, 전화 032-320-8955~9)

수급자격 신청인 의견진술서

성 명		생 년 월 일	
사업장명		퇴 사 일 자	
회사주소		회사전화번호	
담당업무			

위 본인은 사업장에서 퇴사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필로 의견을 작성합니다.
(※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)

상기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수급자격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※ 유의사항: 고용보험법 제108조 제3항에 따라 동 의견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며, 같은 법 제1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